

# 2019 경찰청 국정감사 정책질의 요청서

정보경찰 실태점검과 정보경찰 폐지 요청

2019. 9. 27.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목차

---

목차	2
취지	3
과제1.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4
현황과 문제점	4
요청과제	5
과제2. 경찰의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활동 실태 점검	6
현황과 문제점	6
요청과제	6
과제3.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7
현황과 문제점	7
요청과제	8
과제4. 정책정보 생산 및 활용 실태 점검	10
현황과 문제점	10
요청과제	11
과제5. 정보경찰 생산문서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13
현황과 문제점	13
요청과제	14

## 취지

- 경찰은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치안정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면 경찰은 정보활동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 실제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라 경찰청 정보국은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 또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sup>1</sup>에 따라 치안정보 수집 외에도 정책정보 수집, 집회·시위 관리,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등의 임무를 맡고 있음. 그러나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경찰의 직무를 정한 「경찰법」 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어디에도 없음.
- 이처럼 경찰이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있는것도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그런 만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소위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 등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함.
- 이에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치안정보, 정책정보 명목으로 생산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 경찰의 정보활동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을 포함해 경찰의 내부 조치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점검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함.

<sup>1</sup>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정보국)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과제1.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 1.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사개혁 ▷집회·시위 자유보장 ▷자치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등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개혁 권고안 30건을 의결·발표함.
- 특히 2018년 1월에 구성된 <정보경찰개혁 소위원회>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헌법질서에 반하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2018년 4월 28일 경찰청에 권고함.

[표] <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 주요내용 >

분야	권고안 주요내용
정보국 기능 재편	-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
정보조직 개편	- 정보국 명칭 개정 - 직무범위를 치안정보에서 공공의 안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 - 정책정보·신원조사 업무 이관 - 정보인력의 축소 재배치 - 경찰의 대외협력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 -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관
정보경찰의 법적 근거 마련	- 수권 규정 마련 - 민간영역 상시출입과 개인·단체 사찰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 마련
정보활동 통제강화	-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 실시,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 - 정보활동에 대한 시민감시기구의 감시 실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원칙을 준수하는 등 문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진지 1년이 지났음에도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정확한 내역조차 파악하기 어려움.

- 일례로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에 규정된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하는 관련법 개정안과 정보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한 「경찰법」 개정안은 정부안도 아닌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9247\)](#)로 올해 3월 15일에 발의되었음. 경찰이 개혁위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그 뿐만 아니라 권고 내용 중 정보조직 개편은 국회의 법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혁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금까지 직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또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 등)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에서만 수행하고 정보인력을 대폭축소하라는 개혁위 권고는 정보경찰을 사실상 폐지하라는 의미임. 그러나 2019년 5월 진행된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자료에 따르면 정보경찰 담당인력은 11.3%만 축소함. 이는 경찰이 개혁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다 할 것임.

## 2. 요청과제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개혁위의 권고사항 ▷정보국 기능 개편 ▷정보조직 개편 ▷정보경찰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활동 통제강화 등에 대한 세부내용별 이행내역과 향후 이행계획이 점검되어야 함.

## 과제2. 경찰의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활동 실태 점검

### 1. 현황과 문제점

- 정보경찰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 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2과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2017년 5월 3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총 4,312건의 인사검증을 실시함. 또한 청와대로부터 공공기관장·감사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의뢰받아 2017년 7월 11일부터 12월까지 285건의 복무점검을 실시함. 복무점검으로 ▷국정철학 이해 및 실천 ▷직무역량 ▷대·내외 관계 및 활동 ▷도덕성 및 복무기강 등을 점검하였다고 함.
- 그러나 정보경찰이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을 할 법적 근거가 없음. 억지로 관련 규정을 찾는다면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밖에 없으나 이는 수권조항이 아니라 직무규정으로,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항(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고시 시험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수행하면 되고, 복무 감찰도 헌법 제97조(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에 따라 감사원이 수행할 업무이지 정보경찰이 수행할 일이 아님.
- 그럼에도 경찰이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세평을 수집하고, 복무점검을 이유로 공직자에 대해 포괄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태를 부추기고, 인권침해, 민간인 사찰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그런만큼 경찰의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활동은 중단되어야 함.

### 2. 요청과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2019년 9월)까지 경보경찰이 실시한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함.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명목으로 수집된 정보의 범위와 양, 그 수준 등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과제3.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 1. 현황과 문제점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사소위)가 발족하였고, 진상조사위는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결과와 권고를 발표함. 조사를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정보경찰의 문제도 드러남.
-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에서도 정보경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됨. 정보경찰이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여 故염호석의 장례에 개입하여 가족에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종용하고, 합의시도를 주선한 사실과 가족장을 치르기 위해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폭력적으로 조합원들을 진압한 사실이 드러남.
-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는 한전과 정보관, 경비인력 간에 수시로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하면서 정보관들은 반대 활동을 주도하는 주민들을 ‘강성주민’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관찰과 순화, 설득이 상시 업무임이 드러남. 정보관들은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고, 주민들에게 자녀의 입사로 회유하거나 회사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함. 반대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채증활동을 하고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일도 확인됨. 또한 송전탑 건설로 사망한 주민들에 대한 사인을 축소하는 것도 정보경찰이었음.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서는 경찰(제주청 정보과장, 정보관)·해군·국정원·제주도 유관기관(제주도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계장, 서귀포시장 등)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했으며, 경찰은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됨. 제주지방경찰청 정보과 주관하에 경찰 대응팀을 운영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뒷받침하는 것을 경찰의 임무로 함.
-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여러 사건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은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개입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찰, 협박 등의 활동으로 확인됨.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의 권고에는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불법사찰, 회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특히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의 권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제4호 및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국의 직무 중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집회·시위 등 사회갈등에 정보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활동의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정보활동의 중립성을 담보할 것**

-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집회·시위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경비대책 수립 시 객관적으로 정보경찰의 정보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정보경찰의 활동내용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 요청과제

- 경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정보경찰의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
  -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보경찰의 비대화하는 불필요한 정보활동으로 이어지는 물적 토대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정보경찰 인력을 축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심층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경찰 인력을 대폭 축소하도록 한다. 정보경찰의 인력감축은 새로운 국가정보체계의 구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경찰청은 정보경찰 인력의 축소를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되, 현장 경찰관들의 원활한 전환배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음. 이에 경찰은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은 '18.10월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 결과는 국가정보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인력 감축, 명칭·활동·조직 등 재편, 대외협력·집회신고 관련 업무 이관’ 등에 반영하는 것을 이행계획으로 밝혔음. **이행계획대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시행한 결과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필요한 업무는 무엇인지, 관련한 인력재배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진상조사위의 조사 내용과 같이 노정담당 정보관이 사측의 입장에서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국책사업이나 기업의 사업에 다른 의견을 밝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역담당 정보관을 비롯해 지역청의 정보부서가 개입하는 활동이 정보담당 경찰의 업무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음. 경찰개혁위원회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2호)는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함. **진상조사 결과발표 이후 정보경찰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변화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구체적으로 과거와 같이 유지되는 업무는 무엇이며, 폐지된 업무는 무엇인지)**
  -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4호) 업무를 조정하여 경비 등 다른 부서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경찰청은 2018년 내에 업무협의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는 조정·이관을 마무리하는 것을 이행계획으로 밝힘. 그러나 현재 집회신고를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 외에는 집회 관련 업무를 정보부서가 그대로 하고 있음. **권고에 따른 실제 업무이관계획은 무엇인지, 현재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 과제4. 정책정보 생산 및 활용 실태 점검

### 1. 현황과 문제점

-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는 치안정보 또는 정책정보라는 이유로 필요성이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사찰, 동향파악 등을 해온 것을 정보경찰의 문제로 지적함.
- 실제로 경찰청 정보2과의 주요업무는 정책보고서 작성, 정보 수집·분석으로 업무의 70%를 차지하고, 수집된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등에 배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수행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정보경찰의 업무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의 작성(22.5%)이었음. 대외협력(20%), 집회관리(12.3%)가 그 뒤를 이었으며,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범죄정보’는 단지 1.3%에 불과함<sup>2</sup>
- 청와대에 보고하는 ‘정책정보’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A 보고’와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실 및 총리실 등에 보고하는 정책자료 등이 있음. 경찰청 정보국 정보국장, 정보심의관, 정보2과장을 비롯해 정보국 근무자들은 평소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정보의 사용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조를 파악한 후 그와 같은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정책정보 작성 업무를 수행함.
- 청와대와 정보경찰과의 관계가 긴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로 파견한 경찰(비서관, 행정관)을 통해서 인적으로 연결되고, 청와대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 보고서가 높은 점수를 받고, 이를 통해 승진에 반영되는 인사구조에 기인함.
- 이런 문제는 현재 재판 중인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2016년 선거 개입 사건에서도 드러남. 2016년 4·13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판세와 여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선거 판세분석 보고서’와 ‘권역별 보고서’를 작성함. 전국적으로 3,000명에 이르는 정보경찰들이 지역별로 사전투표소에 투입돼 조직적으로 투표 상황을 염탐한 것으로 보임.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정 치안감)은 이렇게 작성된 권역별 ‘사전투표 보고서’를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아 ‘윗선’에 보고함.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의 가교 구실을 하며 ‘선거개입’ 문건을 주고받은 정 치안감과 박기호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은 박근혜 정부 때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했음. 정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개입 문건 작성은)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주장.
- 정보경찰은 범죄정보가 아닌 정치권 동향이나 밑바닥 민심 파악을 ‘정책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해옴. 선거 개입 및 사찰 논란이 거듭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정보 생산을 총괄하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 요구가 커짐.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소위에서도

<sup>2</sup> KBS 2019.03.03. [범죄 정보 1.3% 불과... “정보국 폐지” 추진에 흠 ‘반대’, 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763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76390>>

정보국 폐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경찰 정보까지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후퇴한 개혁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함.<sup>3</sup>

## 2. 요청과제

- ‘정책정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경찰의 업무로 유지해야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장인데, 그동안 국정운영의 필요로 보고받은 정책정보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 과거 정부가 정책정보로 받은 보고서와 현 정부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것이 단지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의 의지문제가 아니가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함. 또한 각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 및 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텐데, 이런 정보와 경찰의 정책정보의 차이는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함.
- 정보경찰의 업무 중 정책정보 생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음. 정보경찰 개혁을 진행하면서 정보경찰의 업무의 변화가 있는지 점검되어야 함.
  - 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후 정보경찰 업무 내용의 변화나 비중의 변화가 있는지, 정책정보의 비중은 전체 업무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 정보를 공급하는 경찰은 사실상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산함. 정보경찰 개혁뿐만 아니라, 정책정보와 SRI(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 SRI / 특별첩보요구)를 요구하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수요자의 요구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한 개혁방안이 없이 경찰에 대한 통제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 청와대 파견이 승진코스가 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가점을 받는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 대통령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공무원 5명 중 1명은 경찰청 출신이고, 대부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경찰 내에선 통상 청와대 파견은 정보 파트에서 가는 경우가 많고, 청와대 파견 이후 요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로 알려져 있음. 이런 구조가 청와대와 경찰의 유착을 가능하게 함.
  -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보면, 강신명은 정보국장 출신으로 2009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승진해 경찰청에 복귀, 2013년 2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 후 2013년 12월 복귀해 서울청장을 거쳐 2014년 8월

<sup>3</sup> 한겨레 2019.05.03. [\[단독\]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때 전국 사전투표소 '엄탐보고서' 썼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529.html#csidx449abca16a7d4f09bf882ebd08cd76e)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529.html#csidx449abca16a7d4f09bf882ebd08cd76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529.html#csidx449abca16a7d4f09bf882ebd08cd76e)>

<sup>4</sup> 경향신문 2017.08.22. [\[단독\] 파견나온 청와대 행정관, 5명 중 1명이 경찰](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8229805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82298051>>

경찰청장이 됨. 그리고 강신명은 첫 인사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후임이었던  
구은수를 서울청장에 임명함. 이철성 역시 2013년 정보국장을 거쳐 2014년~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근무 이후  
복귀해 2015년 12월 경찰청 차장, 2016년 8월 경찰청장이 됨.

# 과제5. 정보경찰 생산문서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 1. 현황과 문제점

- 정보경찰이 생산·수집한 정보를 ‘열람 후 파기’하는 규정과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정보수집의 합법성·적정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가 어려운 상황임.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1호)에 처하도록 함.
- 2018년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생산된 정보에 대해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관행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원칙을 준수하는 등 문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음.<sup>5</sup>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정보경찰이 생산·수집한 정보를 ‘열람 후 파기’하는 규정과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3월 <KBS>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경찰이 ‘첩보,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다’는 자체 훈령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국가기록원은 경찰청을 방문해 문제의 훈령을 개정하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음. 이후 경찰은 ‘열람 후 파기’ 규정을 훈령에서 삭제했으나 같은 규정이 있는 3급 비밀인 대외비 예규는 개정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정보경찰은 ‘열람 후 파기’ 관행을 지속함.<sup>6</sup>
- 2019년 2월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2018년 상반기부터 ‘WPM프로그램’이라는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문서 파일들을 대거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음. WPM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 덮어쓰기를 7번 반복하면 어떤 장비를 동원해도 다시는 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경찰 정보관들은 KBS 취재진에게 “밤새도록 PC를 갈아엎었다, 주말과 새벽에도 삭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고 밝혔음. 또 자신이 만든 문서뿐만 아니라 PC에 이전부터 저장돼 있던 모든 문서 파일이 삭제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보관은 2018년 초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경찰의 불법 정치관여·사찰 문건이 대거 발견되자 문제가 되는 문건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2018년 6월 검찰이 정보국 소속 김 모 경정이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국 분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정보분실 컴퓨터들은 대부분 파일이 영구삭제된 사실상 ‘깡통 PC’였던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

<sup>5</sup> 경찰청 보도자료 2018.05.01 [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으로 신뢰받는 정보경찰로 거듭나라](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lId=20246&bbsId=B0000011&menuNo=200488)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lId=20246&bbsId=B0000011&menuNo=200488>>

<sup>6</sup> KBS 2019.03.17. [\[단독\] 경찰 ‘정보 문건’ 파기... 위법성 알고도 계속, 2019. 3. 17.](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955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9551>>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보국 문서는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라며 “WPM프로그램을 도입한 건 2015년이고, 수사에 대비하려고 프로그램을 돌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sup>7</sup>

- 2019년 4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개혁위원회 활동 당시 ‘정책정보 범위 보고서’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음. 이 문건에는 ‘정치적 반대 여론 확산에 대비한 보고서’와 ‘VIP(브이아이피)의 국정운영 지원 보고서’ 등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바깥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음.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보고서들은 불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외부에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임. 앞서 경찰개혁위는 해당 보고서 등 열람을 요구했는데, 경찰청 정보국은 “보고서는 작성 3일 뒤 폐기가 원칙이라 남아 있는 문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 요구가 계속되자 언론 기사를 짜깁기한 수준의 ‘깡통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음.<sup>8</sup>
-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보보고서의 기록물성’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22일~23일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경찰청은 점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정보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2. 요청과제

- 정보경찰 생산 정보를 열람 후 파기하던 관행을 버리라는 2018년 5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 현황 및 계획 점검
- 정보경찰이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 후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비 예규(3급 비밀)의 확인
- 2019년 4월 경찰청에 대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관련, 국가기록원에서 통보한 점검 결과 및 이에 따른 경찰청의 개선 계획 점검

<sup>7</sup> KBS 2019. 2. 13. [\[단독\] 경찰청 정보국, 수사 앞두고 ‘불법 사찰’ 문건 대거 영구삭제](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779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7799>>

<sup>8</sup> 한겨레 2019.04.26. [\[단독\] ‘정보경찰 문건’ 은폐 정황...치안감 2명 구속영장](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70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700.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700.html)>